

「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」 2025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

(재)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콘텐츠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‘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 사업화 지원사업’을 예비 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소재 3년 미만 문화콘텐츠기업 대상으로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2025년 4월 25일

(재)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

1 사업목적

- 우수 제품(콘텐츠) 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판로개척을 통한 사업화 역량 강화
-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 및 수익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

2 지원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 사업화 지원사업
-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5. 10. 31.(금)
- 지원규모 : 총 40백만원(8개사 / 기업 당 5백만원 내외)
 - ※ 제안내용, 적정예산 검토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
- 지원대상 : 예비 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소재 3년 미만 문화콘텐츠기업
 - ※ 예비 창업자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전남 본사 사업등록 필수
 - 본사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콘텐츠 기업 (지사 제외)
 -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(영상·방송·캐릭터·애니메이션 등) ※ 게임 분야 제외
- 지원방법 : 사업 수행 후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른 실비정산(사후지급)

○ 지원내용 :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

○ 분야별 상세내용

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한도
시제품	- 제품(콘텐츠)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· 인건비, 외주용역비 등	5백만원
마케팅	- 온·오프라인 광고등 마케팅 활동을 위한 직접비용 · 키워드 광고, 배너광고, SNS 광고,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 · 매체 이용 광고(TV, 라디오,신문, 유튜브 광고 등)	5백만원
	- 브랜드 디자인 · BI/CI, 브랜드 네이밍, 패키지 디자인 등 개발 및 리뉴얼	
	- 콘텐츠(제품)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· 기업 및 콘텐츠 영상물 제작, 방송용 영상물 제작 등 -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※ 단순 홍보물품(판촉물 등) 구매 제외, 홈페이지 제작 제외	
	-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· 부스 임차료(기업 부스 임차비용) - 시설구축비(네트워크, 전기 시설, 비품 설치 등/물품 등 현물 구입 제외/ 운송비 제외) ·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통·번역비 등 ※ 단순 참가비 제외, 지원항목 외 기업부담(항공료, 체재비 등)	

※ 위 항목 이외에도 효율적인 사업화 전략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(접수 전 사전 문의 필수)

※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자율 지원(부가가치세 기업 부담)

사업화 지원사업 성과목표

- 필수사항 :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1식, 결과물 1식
- 선택사항 : 신규 일자리 창출, 지식재산권 창출, 투자협약 등 1건 이상
- ※ 선택사항 표기항목 이외 성과의 경우 협약 시 진흥원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
- ※ 사업량 미달 시, 사업비 미지급 및 환수조치 등이 있을 수 있음

3 추진일정

구분	일정	주요내용
사업 공고	2025. 4. 25.(금) ~ 5. 23.(금)	모집 공고 및 접수(홈페이지 및 이메일)
선정평가	2025. 5. 29.(목)	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서면 평가
협약체결	2025. 6. 2.(월)	진흥원 - 지원기업 간 협약체결
사업수행	2025. 6. 2.(월) ~ 10. 31.(금)	사업화 활동 수행
결과평가	2025. 10. 31.(금) 이전	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발표평가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- 시제품 제작 지원방식 : 협약체결 후 2회 분할지급
 - 1차 : 협약체결·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원금 60% 지급
 - 2차 : 중간평가(7~8월 중 예정) 통과 시 지원금 40% 지급
 - ※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(협약 종료일 + 90일)
 - ※ 2차 중간평가 결과 **60점** 미만인 경우 재평가 진행 이후 지원금 지급 및 환수 결정
 - ※ 결과평가 시 **60점** 미만인 경우 **지원금 환수**
 - ※ 상기 지원방식은 변동 될 수 있음

- 마케팅 지원방식 : 결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지급(사후 정산)
 - ※ 회계정산 불인정 금액은 지급 하지 않음
 - ※ 상기 지원방식은 변동 될 수 있음

4 신청 및 접수방법

- 공고기간 : 2025. 4. 25.(금) ~ 5. 23.(금) 17:00
- 접수기간 : 2025. 4. 30.(수) ~ 5. 23.(금) 17:00까지
- 접수방법 : e-mail 접수 및 원본은 담당자에게 직접제출
 - ※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 후 제출 (파일명 :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_기업명)
- 접수 및 문의처
 - (재)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팀 김재형 수석
(T. 061-339-6928 / E-mail: kjh@jcia.or.kr)
- 접수서류: 지원 신청서, 수행계획서, 실적 증빙자료 등

제출서류 목록	비고
① 지원 신청서	[서식 1]
② 수행계획서 (회사/ 제품 소개자료, 수행 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포함)	[서식 2]
③ 서약서	[서식 3]
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	[서식 4]
⑤ 사업자등록증 사본(해당시)	
⑥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 경우) 해당시	
⑦ 대표자 주민등록등본	
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,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.	
⑨ 기타 증빙서류	

5 신청제한 대상

-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국세,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대표가 국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진흥원 관련 협약,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동일과제(결과물이 동일한 경우)로 타기관 및 우리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을 경우

6 선정기준

- 선정방법 : 서면평가
 - 사업계획서,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제한 등 적격여부 확인 및 평가항목·배점을 기준으로 평가 실시
 - 평가위원 산술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
 - ※ 평가위원회 구성 : 진흥원 DB 활용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5인 이내 선정 (평가위원 수는 변경 될 수 있음)
-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시장 경쟁력 (20)	- 보유 제품(콘텐츠) 우수성 및 기능성 등 시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?	20
사업계획 우수성 (60)	- 시제품 및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?	10
	- 수행기관의 역량은 충분한가?	10
	- 사업수행 가능성 및 사업지속 의지가 있는가?	20
	-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?	20
사업비 적정성 (20)	- 사업비는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?	20
합계		100

- 선정발표: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jcia.or.kr>) 사업공고에 게시
 - ※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

7 기타사항

○ 관련규정

- (재)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
- (재)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

○ 일반사항
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,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, 수행기관의 책임임
-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·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 업체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(수행기관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
-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·전시 될 수 있으며, 선정기업은 성과관리를 위해 지원기간 및 지원기간 종료 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지원결과(중간 또는 최종)에 대한 평가 결과가 “불량” 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주관기업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-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과제(결과물이 동일한 경우)로 타기관 및 우리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,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